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-19호

「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,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년 1월 12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##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 위반소지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 정비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제2조(사업의 범위) 공영개발사업의 범위 수정
  1. 토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
  2. 주택사업과 그 부대사업
  3.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
- 조례 제3조(관리자) 일부 수정
- 조례 제4조(조직), 제5조(인사), 제6조(기업관리의 규정), 제13조(수입금 마련지출), 제17조(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), 제20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) 삭제
- 그 밖에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문 정비
  - “~의 규정에 의한” → “~에 따른”
  - “이라 함은” → “이란”
  - “기타” → “그 밖의”/“그 밖에”

- “1인” → “1명”/ “인” → “명”
- “~의 규정에 의하여” → “~에 따라”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. 12. ~ 1. 17.

#### 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[pjw1028@korea.kr](mailto:pjw1028@korea.kr)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
##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택지조성사업 및”을 “토지개발사업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단조성사업 및”을 “주택사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1인을 두며, 관리자의 임명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다”를 “1명을 둔다”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2조 제1항 중 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9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시장의”을 “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“로 한다.

제12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 제1호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
4.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
5. 토지취득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,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법 제36조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 중 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법 제48조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10인 이상 15인” 을 “10명 이상 15명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